

『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지난 5. 28일 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시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으로 확정하고 설립등기를 함에 따른 후속 조치
- 장학재단 임원 중 이사 수 증원으로 기관·단체 및 고액 기탁자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

다. 주요내용

- 조례명 및 각 조항 문구 변경
 -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을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의 문구 변경

○ 이사의 수 증원(안 제3조 제1항)

- 이사수를 5인 이상 15인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증원

라. 참고사항

○ 「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정관」 제2조 및 제1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곽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를 대표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뜻이 내포된 장학재단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
- 각계각층 시민대표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장학재단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를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로 제명 변경하고,
- 장학재단의 이사 수를 「5인 이상 15인 이하」에서 「5인 이상 25인 이하」로 증원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등기와 부합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임원 중 이사 수를 증원하여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